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79호

###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기본이념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로행사 등)**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2.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사회화 교육 및 사회 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평생학습과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3. 지역 사회와 연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경로당 운영)**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노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0호

###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에 설립 신청하여 승인 받은 군산시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 경기대회(친선 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7.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1호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 </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2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항과 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함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주요사업 투자심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3호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대상자 및 시장이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도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별표 2] 의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선린우호상 필요에 의한 감면 】

- 시장이 선린우호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수준의 감면 및 별도 할인을 적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단위: 원)

##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500	
어 린 이	500	400	

## 【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소년,군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을 적용

## 【 선린우호상 필요에 의한 감면 】

- 시장이 선린우호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수준의 감면 및 별도 할인을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람료) ①·②(생략)</p> <p>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④ (생략)</p>	<p>제7조(관람료)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_____국 _____국 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도의 인접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4호

###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으로, “근로자·사용자 및 군산시(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를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군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로, “군산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노사정의 책무)”를 “(노사민정의 책무)”로 같은 조 중 “노사정”을 “노사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의원 및 공익”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 대표자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취업노사담당”을 “취업노사계장”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u>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 및 군산시(이하 “노사정” 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산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u>군산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u>를 설치하고 이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노사정의 책무) 노사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u>노사정협의회</u>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u></li> <li>2. <u>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u></li> <li>3. <u>노·사분규와 관련된 실업</u></li> </ol>	<p><u>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군산시(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 ----- --<u>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u>----- ----- .</p> <p>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u>노사민정</u>----- ----- .</p> <p>제3조(설치 및 기능) ----- <u>노사민정협의회</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u></li> <li>2. <u>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u></li> <li>3. <u>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u></li> </ol>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2. (생략)

3. 시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취업노사담당이 된다.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  
-----.

1.·2. (현행과 같음)

3. 주민-----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 대표자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군산시 투자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취업노사계장이 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5호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을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축신”을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0조제6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7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8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9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13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같은 조 제19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한다.

제32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제9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6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7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을 “가목(바닥면적)”으로 한다.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로, “충분히”를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제4호 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5호라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5호가목”을 “제2조8호가목”으로, “제7호”를 “제12호”로 한다.

제58조 중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1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위원장 및 항만경제국장·건설교통국장”을 “항만경제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중에서”를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3년까지 총6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을 “법 제59조”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담당(주사)”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p> <p>10. (생략)</p>	<p>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p> <p>10.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p>	<p>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p> <p>-----</p> <p>-----</p> <p>-----</p> <p>-----</p> <p>-----</p> <p>-----</p>
<p>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p>	<p>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영</p>

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4. (생략)

5. 토지분할

가.·나. (생략)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 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생략)

6. (생략)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

제43조제4항제8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1. ~ 7.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

--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

2. ~ 4. (현행과 같음)

5.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일반재산-----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

한)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생략)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 11. ~ 12. (생략)
- 1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 14. ~ 18. (생략)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한)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7.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8.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9.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10.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11. ~ 12. (현행과 같음)
- 13.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14. ~ 18. (현행과 같음)
- 19. ----- 건축할 수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호 같다.

20. ~ 22. (생략)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생략)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생략)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없는 건축물 -----  
-----.

20. ~ 22. (현행과 같음)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10. ~ 15. (현행과 같음)

16.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6. (생 략)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 8. ~ 13. (생 략)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15. (생 략)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생 략)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 3. ~ 13. (생 략)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15. (생 략)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

용도제한)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7. -----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8. ~ 13. (현행과 같음)
- 14.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 2.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
- 3. ~ 13. (현행과 같음)
- 14.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



13. · 14. (생 략)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 14. (생 략)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 14.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3.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 1. (생 략)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위락지구
- 2. 리모델링지구
- 3. ~ 7.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5. (생 략)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7. · 18. (생 략)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 1. (현행과 같음)
- 2. -----  
-- 가목(바닥면적)-----  
-----  
--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  
-----.

<삭 제>  
<삭 제>

- 3. ~ 7.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  
-----.

- 1. ~ 15. (현행과 같음)
- 16. -----  
---- 영 제84조제8항-----  
-----  
-----  
-----.

- 17. · 18. (현행과 같음)
- 19. -----.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목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60퍼센트 -----
5. -----  
---- 제2조제8호라목-----  
-----
6. -----  
----- 제2조8호  
가목-----  
-----  
----- 제12  
호-----  
-----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  
-----  
-----  
-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  
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  
하

14. ~ 21.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

조인-----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이  
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12. ----- 이  
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13. ----- 이하  
(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  
우 400퍼센트 이하)

14. ~ 2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제16조제1항-----  
-----  
-----  
-----.

<단서 삭제>

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  
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를 제외한다.

<신 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  
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 략)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  
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  
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  
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  
센트 이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  
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  
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  
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  
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  
-----.

- 1. · 2. (현행과 같음)
- 3. -----  
----- 100퍼센트  
이하
- 4. -----  
---- 제2조제8호라목-----  
-----



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  
 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  
 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  
 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  
 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  
 적률  $= [(1+0.3a)/(1-a)] \times$  (제6  
 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  
 다.

② (생략)

제6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  
 원장 및 항만경제국장·건설교  
 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  
 -----  
 -----  
 -----  
 -----  
 -----  
 -----  
 -----

-----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  
 우의 용적률  $= [(1+0.3a)/(1-  
 a)] \times$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  
 율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항만경  
 제국장·건설교통국장-----  
 ----- .

④ -----  
 ----- 자중에서 성  
 별을 고려하여 ----- . -----  
 ----- .

2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단서 신설>

2. 3.(생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신설>

1. ----- .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3.(현행과 같음)

⑤ -----  
---- 3번까지 총6년 ----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제67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7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 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 제척된다.

-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

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3. (생략)

② ~ ⑤ (생략)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  
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  
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  
당(주사)이 된다.

③ (생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  
-----  
-----.

1. ----- 법 제59조---  
-----  
-----  
-----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담당(계장)---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

현행	개정안
<p><b>【별표 1】</b>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생략)</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u>가목 내지 사목</u>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p> <p>3.·4. (생략)</p>	<p><b>【별표 1】</b>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u>가목부터 사목까지</u> -----</p> <p>-----<u>해당</u>-----</p> <p>-----</p> <p>3.·4. (현행과 같음)</p>
<p><b>【별표 2】</b>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2. (생략)</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u>당해</u>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p> <p>4. ~ 6. (생략)</p>	<p><b>【별표 2】</b> -----</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u>해당</u>-----</p> <p>-----</p> <p>4. ~ 6. (현행과 같음)</p>
<p><b>【별표 3】</b>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b>【별표 3】</b> -----</p> <p>-----</p>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  
 축할수있는건축물[4층이하  
 (「주택법시행령」제3조제  
 1항제1호에의한단지형다세대  
 주택인경우에는5층이하를말  
 하며,해당단지형다세대주택  
 의1층바닥면적의2분의1이상  
 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  
 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  
 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  
 해당층을층수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의건축물만해당한  
 다.]

1. ~ 3. (생략)

4.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  
 설(같은호차목및안마시술  
 소를제외한다)

5. ~ 11. (생략)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4호의업무시설중오  
 피스텔로서당해용도에쓰이  
 는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  
 곱미터미만인것

13. ~ 17. (생략)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 --- -----  
 --

5. ~ 11. (현행과 같음)

12. -----  
 -----  
 해당 -----  
 -----

13. ~ 17. (현행과 같음)

【별표 4】 -----  
 -----  
 -----

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

-----

1. ~ 6. (현행과 같음)

7. -----

-----

----- 해당 -----

-----

-----

-----

-----

-----

----- 해당 -----

-----

-----

8. ~ 12. (현행과 같음)

13. -----

-----

-----

----- 해당용도 -----

-----

-----

14. -----

----- 지식산업센터 ·

인쇄 · 기록매체복제업 · 봉제

-----

-----

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  
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 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  
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바. (생략)

15. ~ 20. (생략)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  
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1종사업장부터 4종사  
업장까지-----

다. (현행과 같음)

라.-----  
-----  
-----  
----- 같은법 -----  
-----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

마.·바. (현행과 같음)

15. ~ 20. (현행과 같음)

【별표 5】 -----  
-----  
-----  
-----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 19. (생략)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

7. -----  
-----  
----- 해당 -----  
-----  
-----  
-----  
-----  
-----  
----- 해당 -----  
-----  
-----

8. ~ 12. (현행과 같음)

13. -----  
----- 해당 -----  
-----  
-----

14. ~ 19. (현행과 같음)

【별표 11】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해당 -----  
-----

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 17. (생략)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및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 16. (생략)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8. ~ 20. (생략)

-----

6.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2】 -----  
-----  
-----

1. ~ 6. (현행과 같음)

7. -----  
-----해당-----  
-----

8.·9. (현행과 같음)

10. -----  
-----  
----- 같은호 -----  
-----

11. ~ 16. (현행과 같음)

17.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 20.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  
축할수있는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 중 같은호 가목 및 사목 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 6. (생 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  
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신 설>

【별표 14】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목, 사목 및 아목-----

-----

-----

3. ~ 6. (현행과 같음)

【별표 15】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

당 -----

-----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집회시설중 나목

5.·6.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8.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 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7.(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  
-----  
-----  
----- 직업  
훈련소(농·임·축·수산업  
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연구소(농·임·축·수산업-  
-

9. ~ 11. (현행 제8호~제10호)

12.(현행 제11호)-----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같은법시행령 -----  
-----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  
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  
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 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  
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12.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 21. (생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을 수 있는

사업장까지-----

다. -----  
-----  
-----  
----- . ----- 같은법 -----  
-----  
-----  
----- .

라. -----  
-----  
-----  
----- 같은법시행령 -----  
-----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  
-----

마. (현행과 같음)

13. ~ 16. (현행 제12호~제15호  
와 같음)

17. (현행 제16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 22. (현행 제17호~제21호  
와 같음)

【별표 16】 -----  
-----



19. (생 략)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 26. (생 략)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을 수 있는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 11. (생 략)

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19.(현행과 같음)

20.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 26. (현행과 같음)

【별표 17】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사목 및 아목-----  
-----  
-----

3. ~ 8. (현행과 같음)

9. -----  
-----  
같은호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  
까지-----

10.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화장장을 제외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을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  
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 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
5.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 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 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15” 제11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별표 18】 -----

1. ~ 3. (현행과 같음)
4. ----- 해  
당 -----  
-----  
아목 및 너목-----  
-----  
--
5. ~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  
----- 가목부터 라목  
까지-----

10. ~ 17. (생 략)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 12. (생 략)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을 수 있는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3호·4호 및 6호 내지 8호의 건축물은 국토,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 ~ 17. (현행과 같음)

【별표 20】 -----

-----

-----

--

1. (현행과 같음)

2. -----

-----

----- 바목부터 아목까지-----

-----

3. ~ 12. (현행과 같음)

【별표 21】 -----

-----

-----

----- 6호부터 8호까지-----

-----

-----

-----

-----

-----

1. -----

-----

----- 범위-----

-----

2. -----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6. -----  
-----  
----- 마목부터 아목까지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  
----- 가목 및 나목-----

【별표 22】 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을 수 있는

【별표 22】 -----  
-----  
-----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나.-----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3.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 19. (생략)

-----  
 -----  
같은법 -----  
 ----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다. (현행과 같음)

라.-----  
 -----  
 ----- 같은법 -----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13. ~ 15. (현행과 같음)

16.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 19.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 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 폐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가. 별표 15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단,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아 영업중인 폐차장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3.11.23 제536호]에 따른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허용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81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별지1 (생략)		별지1 (현행과 같음)																														
별표1 (생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u>납부칙에</u> 의한 수수료  (단위:원)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u>납부칙 등에</u> 의한 수수료																													
	1. 납부칙		1. 납부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판매 단위</th> <th>용기 규격</th> <th>공급액</th> <th>판매 이윤 (10%)</th> <th>판매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주택</td> <td>1회용</td> <td>5L</td> <td>180</td> <td>20</td> <td>200</td> </tr> <tr> <td rowspan="2">음식점</td> <td rowspan="2">1회용</td> <td>20L</td> <td>720</td> <td>80</td> <td>800</td> </tr> <tr> <td>120L</td> <td>4,320</td> <td>480</td> <td>4,800</td> </tr> <tr> <td>공동 주택</td> <td>1회용</td> <td>120L</td> <td>4320</td> <td>480</td> <td>4,800</td> </tr> </tbody> </table>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L	180	20	200	음식점	1회용	20L	720	80	800	120L	4,320	480	4,800	공동 주택	1회용	120L	4320	480	4,800		(현행과 같음)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L	180	20	200																											
음식점	1회용	20L	720	80	800																											
		120L	4,320	480	4,800																											
공동 주택	1회용	120L	4320	480	4,800																											
	<신 설>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50원																													
별표3 (생략)		별표3 (현행과 같음)																														

##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제4조와 관련)

(단위 : 원)

## 1. 납부칩

구 분	판매단위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이윤 (10%)	판매가격
일반주택	1 회 용	5ℓ	1. 180	2. 20	3. 200
음 식 점	1 회 용	20ℓ	720	80	800
		120ℓ	4. 4,320	5. 480	6. 4,800
공동주택	1 회 용	120ℓ	4,320	480	4,800

##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50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3월 2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82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조건) ① (생 략)</p> <p>② _____</p> <p>_____ <u>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u></p>	<p>제5조(지원조건) ① (현황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 <u>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u></p>

군산시 고시 제2015-3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군산시 조촌동 671-13번지 동군산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 2.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671-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도로

나. 명 칭 : 동군산병원 증축사업 및 도로(소로2-230외 1개노선)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결정 면적㎡	실시계획 변경㎡		비 고
			당 초	변 경	
병원	종합의료 시설	14,564	연면적 23,137.31	연면적 23,382.36	소로 2-230 ( 1,113㎡) 소로 2-236 ( 319㎡) 소로 3-226 ( 266㎡) 중복결정 1,698

나.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 분	노선명	시설결정		실시계획(㎡)				비 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m	폭원 (m)	연장m	
도로	소로2-230	8	329	8	70	9.9	70	확폭개설
	소로2-236	8	622					기 개 설
	소로3-226	8	342	8	40	8	40	개 설

## 4. 주요 변경내용

- 1동본관 : 지상8층, 13,769.58㎡ → 지상8층, 14,201.33㎡ (증431.75㎡)
- 별관동 : 지상5층, 5,034.99㎡ → 지상4층, 6,848.29㎡ (감 186.7㎡)
- 소로 2-230 : 폭원 8m → 폭원 9.9m

## 5.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6.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아 래

##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획실음생략

## 9. 위치도, 계획평면도, 건축물내역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조촌동	671-10	대	515	515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	군산시 조촌동	671-13	대	4,724	4,703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3	군산시 조촌동	671-39	도	26	3	공(군산시)				
4	군산시 조촌동	671-40	도	94	73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5	군산시 조촌동	671-52	답	268	268	공(군산시)				
6	군산시 조촌동	671-54	답	151	151	공(군산시)				
7	군산시 조촌동	671-55	차	596	596	유한회사다음	군산시 조촌동671-18			
8	군산시 조촌동	672-9	전	397	397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9	군산시 조촌동	672-10	차	727	727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0	군산시 조촌동	672-11	대	151	151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1	군산시 조촌동	672-12	차	509	509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2	군산시 조촌동	672-24	전	562	155	공(군산시)				
13	군산시 조촌동	672-27	전	155	155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4	군산시 조촌동	672-28	차	240	240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5	군산시 조촌동	672-29	대	37	37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6	군산시 조촌동	672-31	전	74	74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7	군산시 조촌동	672-32	전	393	393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8	군산시 조촌동	672-33	전	451	451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9	군산시 조촌동	673-2	도	916	222	국(건설부)				
20	군산시 조촌동	678-7	차	789	789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1	군산시 조촌동	678-9	전	2,520	2,520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2	군산시 조촌동	678-10	도	86	86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3	군산시 조촌동	678-11	차	384	384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4	군산시 조촌동	678-12	전	124	5	공(군산시)				
25	군산시 조촌동	678-13	도	154	154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6	군산시 조촌동	678-14	차	806	806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합 계				15,849	14,564					

군산시 고시 제2015-34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서해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군산시 오룡동 832-1번지 도시계획 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 2월 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오룡동 8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내 층별 세부용도지정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군산시 오룡동 832-1번지 일원
  - 학교법인군산기독학원
4. 시설결정면적 : 11,880㎡
5. 변경내역

건물명	층수	실시계획 변경내역				비 고
		당 초		변 경		
		면 적(㎡)	용 도	면 적(㎡)	용 도	
본관동	1층	1,195.95	본관동	1,178.94	본관동	전북고 제287호 (1973.11.12)
				17.05	부대편의시설 (휴게음식점)	

#### 6. 변경사유

- 서해대학교 본관동 1층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하여 복지증진 기여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소 : 생 략

#### 8.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10일

군산시 고시 제2015-35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오식도동 택지예정좌표 기초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15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2. 25.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 - 분 - 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 - 분 - 초)							
				타원체고 (m)							
1	52523	X	271546.93	35°56'36"	X	371853.02	중부	5.170	비응도동 33	2015. 2.9.	철재
		Y	158616.91	126°32'32"	Y	158689.47					
				28.77							
2	52524	X	271582.19	35°56'37"	X	371888.28	중부	5.337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58944.16	126°32'45"	Y	159016.72					
				28.94							
3	52525	X	271622.93	35°56'39"	X	371929.03	중부	5.353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59271.91	126°32'58"	Y	159344.46					
				28.9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4	52526	X	271663.86	35°56'40"	X	371969.96	중 부	5.483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59615.18	126°33'12"	Y	159687.73						
				29.10								
5	52527	X	271702.53	35°56'41"	X	372008.64	중 부	5.304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59939.62	126°33'25"	Y	160012.17						
				28.93								
6	52528	X	271733.52	35°56'42"	X	372039.63	중 부	5.372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60200.35	126°33'35"	Y	160272.90						
				29.00								
7	52529	X	271765.54	35°56'43"	X	372071.65	중 부	5.310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60470.12	126°33'46"	Y	160542.66						
				28.94								
8	52530	X	271796.83	35°56'44"	X	372102.95	중 부	5.403	오식도동 1008	2015. 2.9.	철재	
		Y	160733.39	126°33'56"	Y	160805.93						
				29.04								
9	52531	X	271829.15	35°56'45"	X	372135.27	중 부	5.338	오식도동 821	2015. 2.9.	철재	
		Y	161005.50	126°34'07"	Y	161078.03						
				28.98								
10	52532	X	271871.06	35°56'47"	X	372177.18	중 부	5.474	오식도동 828	2015. 2.9.	철재	
		Y	161356.38	126°34'21"	Y	161428.91						
				29.12								
11	52533	X	271906.76	35°56'48"	X	372212.89	중 부	5.198	오식도동 828	2015. 2.9.	철재	
		Y	161650.26	126°34'33"	Y	161722.79						
				28.85								
12	52534	X	271946.03	35°56'49"	X	372252.17	중 부	5.399	오식도동 828	2015. 2.9.	철재	
		Y	161983.43	126°34'46"	Y	162055.96						
				29.0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13	52535	X	271984.47	35°56'51"		X	372290.61	중 부	5.306	오식도동 827	2015. 2.9.	철재
		Y	162304.88	126°34'59"		Y	162377.41					
				28.97								
14	52536	X	272007.08	35°56'51"		X	372313.23	중 부	5.455	오식도동 827	2015. 2.9.	철재
		Y	162494.21	126°35'06"		Y	162566.74					
				29.12								
15	52537	X	272033.80	35°56'52"		X	372339.94	중 부	5.591	오식도동 1009	2015. 2.9.	철재
		Y	162756.41	126°35'17"		Y	162828.94					
				29.27								

군산시 고시 제 2015-36호

###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0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26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9)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9)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2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중로1-99) 군산공항로 개설공사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군 산 공항로 개설	중로1-99	24.9	2,257	24.9	2,257	94,204.8	
소 계			2,257		2,257	94,204.8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시장
5. 사업시행기간 : 2010. 7. 16. ~ 2015. 12.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5-261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4)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4)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2월 일

1. 사업시행지 : (주)대상앞 ~ 산북동 4토지구획정리지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4)사업
  - 나. 명 칭 : 지방공단 ~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중로1-74)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사업내용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 적(m <sup>2</sup> )	
도로	중로1-74	24	2,130	24	2,130	59,290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시장
5. 사업시행기간 : 2010. 5.. 28.~ 2014. 06. 2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15-1호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내 해당 지역(발생지점에서 반경 3km 이내)에 대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2월 24일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2. 지 역 : 군산시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성산면, 나포면, 구암동, 개정동 지역
3.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가. 축산농장 :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  
 나. 축산관련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 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 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조류인플루엔자
5. 기 간 : 2015. 2. 25일부터 ~ 3. 26일까지(30일간)

## 6. 기타사항

- 가. 이 공고의 발령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7. 문의처 : 군산시 농정과(☎ 063-454-2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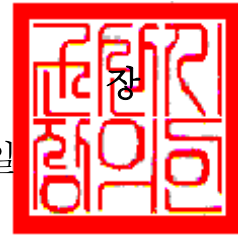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15-2호

##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실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 시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 실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2015년 2월 24일



1. 목적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및 전국 확산방지
2. 지역 : 군산시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성산면, 나포면, 구암동, 개정동 지역
3. 대상 : 가금류 관련시설 및 관련시설을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
  - 가. 축산관련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나. 축산관련 차량 : 가축, 분뇨, 사료 등 운송차량
4. 기간 : 2015.2.25일부터 2015.3.26일까지(30일간)
5. 기타사항
  -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축산관련 시설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차량은 축산관련 시설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 차량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군산시 농정과 (전화 063-454-2875)